소상공인 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생활분야 설명 이 콘텐츠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1
1. 소상공인 알아보기 4
1.1. “소상공인”이란? 4
1.1.1. 소상공인의 이해와 보호 4
2. 소상공인 창업 8
2.1. 소상공인 창업 지원 8
2.1.1. 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지원 8
2.1.2. 상권정보 지원 9
3. 소상공인 운영 11
3.1. 소상공인 자금 지원 11
3.1.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1
3.1.2. 사회보험료 지원 13
3.2.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16
3.2.1. 디지털 활성화 지원 16
3.2.2. 조직화·협업화 등 지원 17
3.2.3.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19
3.3. 손실보상 및 법률구조 지원 등 22
3.3.1. 손실보상 22
3.3.2.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24
3.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등 25
3.4.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 25
4.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28
4.1. 소상공인 폐업 지원 28
4.1.1.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28
4.2. 소상공인 재기 지원 29
4.2.1.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30

1. 소상공인 알아보기

1.1. “소상공인”이란?

1.1.1. 소상공인의 이해와 보호

소상공인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상시 근로자 기준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①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②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①의 경우는 제외):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③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국수 또는 두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 소상공인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 ※ “대기업 등”이란 대기업, 체인사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동반성장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 대기업 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해야 하며,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6항).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 기간
LPG연료 소매업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1. 9. 16.(목) ~ 2026. 9. 15.(화)
간장 제조업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5. 2. 1.(토) ~ 2030. 1. 31.(목)
된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5. 2. 1.(토) ~ 2030. 1. 31.(목)
고추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5. 2. 1.(토) ~ 2030. 1. 31.(목)
청국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5. 2. 1.(토) ~ 2030. 1. 31.(목)
두부 제조업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2025. 3. 1.(토) ~ 2030. 2. 28.(목)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려는 업종·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해당 업종·품목을 주로 영위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생계형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는 해당 업종·품목의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
-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

2. 소상공인 창업

2.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1.1. 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지원

(예비)소상공인은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비)소상공인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1:1 마케팅
		창업 사업화 자금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경영개선교육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경영·마케팅 교육, 유관기관 협업 창업, 수출 교육 등을 제공(무료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초·심화·특화 기술교육 비용 지원(수행: 민간교육기관)
		상생협업교육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 교육을 제공(교육생 선정, 무료교육)
		온라인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 서비스(전자도서관) 제공
		찾아가는 1:1 교육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참조 >

Q.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센터(https://sbizinfo.co.kr)-지원사업-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자주하는 질의응답>

※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및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상권정보 지원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현황,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지역·업종별·창의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고,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상권 발굴·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빅데이터 상권분석	상권, 행정동 등 선택 영역에 대해 매출 및 유동인구, 배달, 업종 등 상권 정보를 제공해 창업 의사결정 지원
	내가게 경영진단	사업장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현재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사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권·시장 핫트렌드	빅데이터 기반 핫플레이스 테마 상권, SNS 트렌드 등 최근 이슈 정보 및 소상공인 관심정보(축제, 관광 등) 제공
	소상공인 대시보드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현황을 실시간 변동이 가능하도록 인포그래픽스 형태로 시각화
	정책정보 올가이드	소상공인24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지원사업 안내 및 데이터 분석·비교를 통한 공단 지원사업 성과분석 서비스 제공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

※ 관심지역의 업종, 유동인구, 매출 등 상권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빅데이터플랫폼 소상공인365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빅데이터플랫폼 소상공인365(http://bigdata.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운영

3.1. 소상공인 자금 지원

3.1.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력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저신용자, 재창업·채무조정자),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명		지원규모 (억원)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금리±@)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12,200	일반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0.6%p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1,500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연 2.0%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6,000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1.6%
	대환대출	3,000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5천만원	연 4.5%
	재도전 특별자금	1,000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1.6%p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1억원	기준+0.6%p
			(도약형) 매출증가, 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	2억원	기준+0.4%p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500	장애인기업	1억원	연 2.0%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2,000	(일반) 업력 무관 소공인	(일반)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6%p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백년소공인 선정 소공인	(유망)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0.4%p
	혁신성장 촉진자금	4,800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0.4%p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360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최대 5억원	기준+0.4%p
	상생성장 지원자금	760	(일반형) TOPS 프로그램 1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일반형) 운전 7천만원	기준+0.4%p
			(성장형) ① TOPS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②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소상공인	(성장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도약형) Post-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도약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 공고』 >

※ 소상공인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및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구분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511,200	82,560
2등급	3,024,800	99,450
3등급	3,538,390	116,330
4등급	4,051,990	133,220
5등급	4,565,590	150,100
6등급	5,079,180	166,990
7등급	5,592,780	183,870
8등급	6,106,380	200,760
9등급	6,619,970	217,640
10등급	7,133,570	234,530
11등급	7,647,170	251,410
12등급	8,160,761	268,299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구분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38,025

<출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s://go.sbiz.or.kr)>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3.2.1. 디지털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 및 제4호).

-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사업

▪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디지털 활성화 지원사업

<table>
<tr><th>사업명</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4">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td><td rowspan="4">소상공인</td><td>(준비)플랫폼사 협업교육, e-러닝 등 온라인 초기 진출 소상공인 지원</td></tr>
<tr><td>(실전)인터넷쇼핑몰 판매 촉진, 유통채널(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제품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광고 등 매출 향상 및 물류서비서 지원</td></tr>
<tr><td>(도약)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인터넷쇼핑몰 입점,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등), 온라인 판매와 연계한 해외물류 풀필먼트 등 성장·도약 촉진</td></tr>
<tr><td>(기반시설)지역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활용 지원 거점시설(소담스퀘어), 인터넷쇼핑몰 입점 제품의 오프라인 체험·판매 시설(소담상회) 운영</td></tr>
<tr><td>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td><td>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3">구입형</th><th rowspan="2">렌탈형</th><th colspan="2">S/W형</th><th rowspan="2">선도형</th></tr>
<tr><th>보편</th><th>그 외</th><th>베리어프리</th><th>개인</th><th>가맹점</th></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colspan="2">일반기술
(서빙·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td><td>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td><td>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서빙·조리로봇
2년 렌탈비</td><td colspan="2">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td><td>기술
패키지 등
구입비</td></tr>
<tr><td colspan="2">지원한도</td><td colspan="2">500만원</td><td>700만원</td><td>연 350만원</td><td colspan="2">연 3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 rowspan="2">국비지원비율</td><td>일반</td><td colspan="2">50%</td><td>70%</td><td>70%</td><td rowspan="2">100%</td><td rowspan="2">90%</td><td>70%</td></tr>
<tr><td>우대</td><td colspan="2">60%</td><td>80%</td><td>80%</td><td>80%</td></tr>
</table>
</td></tr>
</tabl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8-29쪽 >

※ 소상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조직화·협업화 등 지원

소상공인은 사업의 조직화·협업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조고도화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새로운 사업의 발굴
- 사업전환의 지원
-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로 확보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 판로개척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판로개척 지원사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집기 및 부스임차비 등) 지원
		마케팅	• 국내·외 마케팅지원(온·오프라인 광고지원 등) • 국내·외 홍보물 제작지원(카달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등)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브랜드강화	• 브랜드 디자인개선, 브랜딩 설계 등
		기타	• 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2쪽>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table>
<tr><th>사업명</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소상공인
협업
활성화</td><td>5명인 이상의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td><td>•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총 사업비의 20% 내외 협동조합 자부담 필수)
<table>
<tr><th>지원유형</th><th>주요내용</th></tr>
<tr><td>공동장비</td><td>•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td></tr>
<tr><td>공동일반</td><td>•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등 지원</td></tr>
</table></td></tr>
</tabl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18쪽>

Q. 협업체 등록신청은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A. “협업체 등록신청”이란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신청하기 전 조합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즉,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또는 판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협동조합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조합원 정보, 조합의 설립현황 등을 작성하여 협업체 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업체 등록신청은 이사장 또는 소속 조합원만 가능하고, 해당 협업체가 조합원 중 한 명에 의해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이사장의 등록신청은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 신청된 목록 조회만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문의하기-FAQ>

※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s://www.sbiz.or.kr/cop/main/cop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업체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이란?

▪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위 1.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 위 1. 및 2.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및 제2항).

·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소상공인 등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 위 1. 및 2.에 따른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3항).

·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 소상공인 등이 위 1. 및 2.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4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3. 및 4.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6항).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인지도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신청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전단).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매출액 현황 자료

▹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유효기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한 소상공인 등이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백년소상공인은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 √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자세한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면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및 별표 1).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백년소상공인은 백년 이상 존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

-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 금융지원 사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백년소상공인 육성사업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발굴·선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성장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기획전 등 온라인 판로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연계지원 (홍보) 이벤트 및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15쪽>

백년소상공인의 포상

▪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5조의9제1항).

-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인지도

▪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포상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을 따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2항).

>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손실보상 및 법률구조 지원 등

3.3.1. 손실보상

소상공인은 감염병에 따른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본문).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가 심의·의결한 조치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

> ※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기준·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전단).

▪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후단).

>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감염병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3항).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납부기한
- 납부기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본문).

3.3.2.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참조).

>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 · 전화상담: ☎ 1599-0209
>
> · 인터넷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 Q.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A. 일반상담을 통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연계와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분쟁조정신청서, 내용증명서 등 각종 서식 샘플, 상담사례집, 공정거래 위원회 의결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https://unfair.sbiz.or.kr)-FAQ 참조>

그 밖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관

▪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다음의 사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및 별표 1].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 포함).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함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사건은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방법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인터넷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방문상담/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모바일 통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아래 서류 전부 제출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출처: 소상공인컨설팅(https://www.sbiz.or.kr/)-사업소개-무료법률구조지원이란?>

※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등

3.4.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

소상공인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공제제도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 참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단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및 계약체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제1항제1호)을 낼 것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
>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 ☎ 1666-9988
>
> ·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 등으로 가입
>
> · 인터넷 가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 · 방문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지부 등 방문
>
> <출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가입 및 납부안내-가입방법>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사유 및 공제금 지급

▪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 또는 해산(법인만 해당)한 경우
>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으로 사업장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①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해당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함)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7항 본문).

-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7항 단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4.1. 소상공인 폐업 지원

4.1.1.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철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원스톱 폐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

①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 25년 7월 11일 이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23.1.1~25.7.10.폐업)

√ 25년 7월 11일 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25.7.11. 이후 폐업)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과거 수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따른 강제 환수자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 확인되는 경우(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②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가능

분야	세부지원내용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③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원스톱폐업 지원>

Q. 폐업으로 인해 철거가 완료된 상황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 네, 기폐업(기철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1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2차서류(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전후사진)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 참조>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전망 강화-원스톱 폐업지원>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소상공인 재기 지원

4.2.1.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세부기준
재창업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心)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소상공인(기존 사업장 선 폐업 후 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나.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 다.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지원내용)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화취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배우자(만15세 이상 만69세 이하)

• (지원내용)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세부사항</th></tr>
<tr><td rowspan="5">기초교육</td><td colspan="2">·(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
·(방식) e-러닝 교육/10h 이상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료 처리함
·(내용)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5개 이상 수강해야 수료 인정)</td></tr>
<tr><td>주제</td><td>과정별 세부 내용</td></tr>
<tr><td>취업기초</td><td>변화관리/자아성찰/진로탐색/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td></tr>
<tr><td>취업 성공 마인드</td><td>재취업 성공 스토리/성공 면접 사례 분석</td></tr>
<tr><td>취업 관문통과 기술</td><td>목표 설정
직종/업종/경력유형별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기술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td></tr>
<tr><td>자격증 및 지원정책</td><td>자격증/취업지원 정책 활용</td></tr>
<tr><td>심화교육</td><td colspan="2">·(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방식) 대면교육/2~3주, 30h 이상
·(내용) 1:1면담(사전·사후),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교육 수료시 교육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지급</td></tr>
</table>

※ 전직장려수당

• (지원대상) 폐업 신고를 한 후, 특화취업 기초 및 심화교육 수료하고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전직장려수당은 1차 60만원,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세부요건</th><th>비고</th></tr>
<tr><td rowspan="2">1차</td><td rowspan="2">구직</td><td>·(공통)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 폐업 신고 완료</td><td rowspan="2">공통 및 단일요건 충족</td></tr>
<tr><td>‘25’, ‘26’년 취업 기초 및 심화교육 수료</td></tr>
<tr><td>2차</td><td>취업</td><td>·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1차 지급 완료한 경우만 2차 신청 가능</td><td>-</td></tr>
</table>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 경영개선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경영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세부기준
매출액	25.11. 이전 개업자로서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 ~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진단(전담PM)을 통해 참여기회 부여 여부 판단 -매출확인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감소 판단: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매출액 한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단위)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재기사업화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